

#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 : 이론 및 사례분석, 신뢰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박재완 원광대학교

## 논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군비통제 이론의 발전적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관계개선과 초보적인 군비통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면 돌파전, 새로운 길을 천명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 이론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과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군비통제 이론에서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포괄하는 '신뢰구축'으로 하고, 기존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비제한 및 감축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은 신뢰형성, 구축, 보장, 검증 및 위반시 제재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주제어 :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신뢰구축조치, 국제레짐, 검증

## I. 서론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체결하여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철거하기도 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1).<sup>1)</sup> 그리고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 간 국제상선 통신망을 정상 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11월 30일에는 11개 GP를 시범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12월 2일에는 시범 철수 대상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2-213).<sup>2)</sup>

남북한의 신뢰구축 조치가 한반도의 군비통제를 견인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하는 데는 많은 제약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남북한의 오랜 적대감, 갈등과 반목, 상호 신뢰하지 못하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여전히 치명적인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 이후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생산하여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장티푸스 등 13종의 생물학 무기용 병원체를 배양·생산할 수 있으며 무기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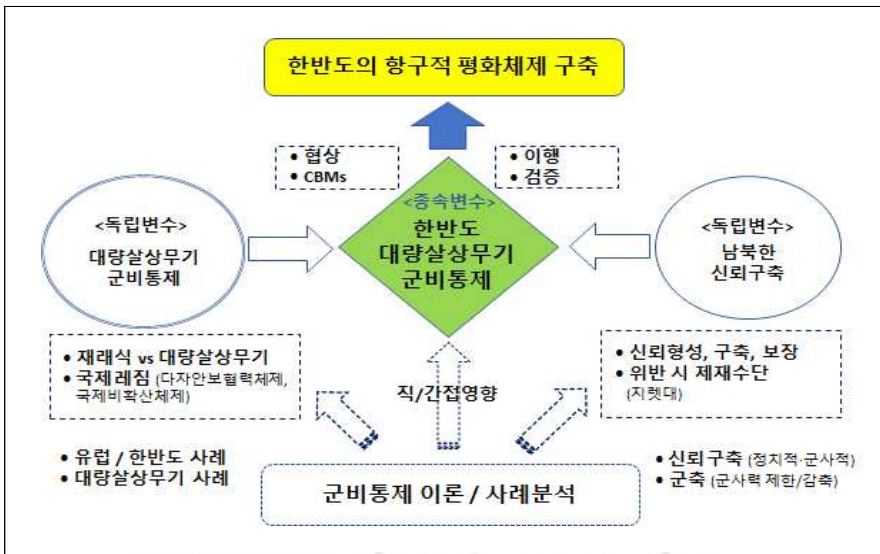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건은 군비통제가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핵 및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국방부는 2018년 4월 23일 00시부터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5월 1일부터 4일까지 장비를 철거했으며, 북한군 역시 4월 24일에 방송을 중단하고 5월 1일부터 2일까지 장비를 철거하였다.
- 2)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한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은 있으나,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 수역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항공 정찰 구역 제한 등은 남한의 안보를 일방적으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첫째 기존 군비통제 이론 측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운용적 군비통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둘째 신뢰란 무엇이고 또 그 신뢰를 구축하고, 보장하고, 검증하고, 또 미이행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셋째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는 기존 재래식 군비통제와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떤 전략으로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군비통제 이론의 발전적 검토, III장에서는 유럽의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와 한반도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사례분석, IV장에서는 발전적 이론 검토와 사례분석 함의를 활용하여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분석의 틀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안으로 대량살상무기와 관계된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국제비확산체제를 활용하는 방안, 북한의 합의사항 위반과 사찰, 검증 문제까지 아우르는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분석의 틀



## II. 이론적 배경: 군비통제 이론 고찰

군비통제(軍備統制: arms control)는 잠재 적대국 간 군사력의 운용과 병력, 무기 등 구조를 통제하여 군비경쟁을 안정화하고, 합의사항의 위반을 제재하여 전쟁위험과 부담을 제거, 최소화시켜 안보를 증대시키려는 모든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태규 2012; Goldblat 2002, 3). 국방부에서 군비통제라 함은 잠재 적대국 간 군비경쟁의 안정화, 즉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병력, 무기 등)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 위험과 부담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켜 안보를 증대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군비축소(軍備縮小: disarmament) 또는 군축(軍縮), 군비해제(軍備解除), 군비제한(軍備制限: arms limitation), 신뢰구축조치(信賴構築措置: 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국방부 2014, 2).

군비통제를 상호합의로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를 통제하여 전쟁의 위험을 감소 또는 제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오윤경 외 2000, 591-592), 국가 간의 갈등과 정쟁의 도구와 결과에 대해 임의적으로 한계를 설정하려는 국가의 모든 행위, 국가 간의 합의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국방대학교 2002, 73-74).<sup>3)</sup> 군비통제의 의도와 목적이 잘 포함하고 있는 정의는 셸링(Thomas C. Shelling)과 헬퍼린(Morton H. Halperin)은 군비통제는 평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 기회비용을 감소시키고, 잠재 적대국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전시에는 그 확산범위와 피해범위, 파괴력을 감소시키는 모든 형태의 협력이라고 정의했다(Schelling and Halperin 1985).

군비통제는 군비(軍備, arms)라는 용어와 통제(統制, control)라는

3) 국가의 행위는 무기의 실험, 사용, 거래, 소유 등에 대한 통제나 규제나 군비통제 관련 모든 여건조성행위를 포함하여 군비통제의 확장된 개념에는 전면적인 군비 축소(disarmament)나 군비감축(arms reduction), 군비제한(arms limitation), 무장해제(disarmament)까지 포함한다. 군비축소와 무장해제는 영어로 모두 'disarmament'로 동일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군비통제(arms control)라는 용어로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용어의 합성어로 전쟁방지와 예방을 위한 것으로 군비통제를 논의하는 문헌에는 유사한 용어가 많지만 군비통제(arms control)와 군축(disarmament)을 많이 사용한다(Richard D. Burns 1993, 2-12).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남북한의 쌍무적 군축 또는 다자간 군축, 군비통제 대상인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최초에는 운용적 군비통제에서 구조적 군비통제로 변화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국한된 지역군비통제에서 전 세계의 국제군비통제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는 자발적 군비통제가 이상적이나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강제적 군비통제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군비통제는 다자간의 군축, 전면적 완전군축,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국제군비통제, 자발적 군비통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열수 2013, 313-317)

위의 군비통제 대상에서 운용적 군비통제와 군사적 신뢰구축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운용적 군비통제의 경우 군비통제가 목적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관계개선을 위한 군사적 보장이 목적이라는 점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해 조치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운용적 군비통제와 혼재되어 있고, 확장기 시설의 철수 및 폐기는 구조적 군비통제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이라고도 하지만 남북협력 및 관계개선, 경협 등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국방부는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로 구분하고(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4), 일부 학자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구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미국의 랜드연구소의 데이비스(Paul K. Davis)가 1988년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 분석을 통해 초기에는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 이후에는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로 구분하기도 하였다(Davis 1988, 1).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이 구분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표구 2019, 148-149). 데이비스

가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 분석을 통해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 구분 이후 1989년 미국의 랜드연구소 전략평가센터에서 작전적 최소소요(operational minimum) 개념을 도입하여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Rand SAC, 1989, 1-4). 실제 서구의 많은 문헌에서는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신뢰구축 분야와 운용적 군비통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다(이표구 2019, 149).

유엔군축연구소(UNIDIR)는 운용적 군비통제 개념을 삭제하고, 군사적 수단의 배치나 운용, 처분 등에 정치적 처분 또는 법적 제약을 가하는 군비통제와 군사적인 능력 수준을 감소 또는 작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특정 무기를 금지시키는 군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Steve and Thomas 2003). 랜드연구소에서 제시했던 작전적 최소소요 개념에 의해 제1제대에 배치된 부대를 상대방과 비교해서 초과한 전력에 대해 후방으로 배치하고 철수하게 되면 이들의 전비태세가 낮아지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and SAC, 1989, 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이론을 기초로 군비통제를 ①신뢰구축(정치적·군사적) ②군축(군사력 제한 및 감축)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I. 군비통제 사례연구

#### 1. 유럽의 군비통제 추진현황과 함의

유럽의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는 1952년 3월 소련의 평화조약을 효시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소련이 평화조약을 제안한 것은 서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서독의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독일 통일과 중립국, 최소

한의 군사력 보유를 제안했으나 NATO가 수용하지 않았다.

1950년대 유럽의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 제안들은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GCD,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었다. 하지만 냉전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반적이고 완전한 포괄적인 군비통제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군비통제의 필요충분조건이 충분한 신뢰라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동서진영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군비통제로 나선 데탕트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데탕트 시대를 이끈 촉매는 역설적이게도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 일촉즉발, 일보직전의 상황까지 몰고 갔던 1962년의 쿠바미사일 사태였다. 미국과 소련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전달 수단을 필요로 하여 1963년 6월 20일 미·소 간의 핫라인 조약(Hot-line Agreement)이 체결된 것이다. 1950년대는 온건한 방식의 검증이 진행되었다. 온건한 검증 방식은 인공위성과 같은 수단으로 상대방 영토에 들어가지 않고 조약위반 탐지와 확인이 가능한 검증 수단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서로의 위협을 인식하고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많은 군비통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80년 중반까지는 레이건(Ronald W. Reagan)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군비통제 협상은 중단되거나 담보상태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5년 집권한 소련의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 정책으로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포괄적인 군비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소수의 지도자 정책에 따라 군비통제 정책이 순항을 하거나 중단 및 담보상태를 거듭하기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새로운 데탕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헬싱키협약에서 제시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을 확대·개편하여 군사적으로 의미가 크고 정치적 구속력이 있으며 적절한 검증방법이 포함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Document)을 1986년 9월 19일 체결하였다.<sup>4)</sup>

1990년대의 군비통제 조약들은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강력한 검증장치가 마련된 조약들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전략핵무기의 대폭적 감축, 신뢰안보구축방안(CSBMs) 실시, 화학무기 폐기 합의와 강력한 검증장치의 마련, 군사적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영공개방협정(OST, Open Sky Treaty)까지 체결되었다. 1990년 12월의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I,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I),의 경우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를 감축대상무기(TLI, Treaty Limited Item)를 선정하고 보유 상한선 설정, 감축방법, 검증방법을 규정하고 병력감축도 거론하였다.

특히 비엔나협약의 경우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의 시행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톡홀름협약에 추가하여 군사정보 교환, 위협감소, 접촉 및 의사소통, 연레이행검토회의, 그리고 교환된 자료에 대한 평가 항목이 검증의 일부로 새롭게 보완되기도 했다.<sup>5)</sup> 유럽에서의 군사력 균형과 상호 군축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지만 소련이 비대칭 감축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으며 핵무기 감축에 있어서도 동등안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비엔나협약에서 상호균형군사력감축(MBFR,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 군비통제, 특히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에 있어서 큰 난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감축내지는 폐기하자고 하면 남한은 감축 또는 폐기할 핵무기 없고, 그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공개방협정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

4) 스톡홀름협약의 신뢰안보구축방안(CSBMs)에는 ①특정군사활동의 사전 통보, ②특정 군사활동의 참관, ③연간군사활동계획 사전통보, ④규제방안, ⑤검증방안이 포함되었다.

5) 비엔나 협약은 1992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4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6) 남북한의 경우 군사분야 합의서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항공정찰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현황과 함의

군비통제 개념과 정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군비통제는 적대국가 사이의 상호협의를 통해 군사적 위협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양측의 군사적 안정을 달성하는 행위이다(Goldblat 2002, 3). 남북한의 군비통제는 남북관계와 정세변화에 따라 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크게 4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953년 휴전 이후 1970년대까지,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2000년 6.15 계기,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로 개략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1953년 휴전 이후 시기이다.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는 북한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다.<sup>7)</sup>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미군 등 연합군, 외국군의 철수, 남북한 병력 10만 이하 감군, 무력 불사용을 보장하는 남북한 평화협정체결 등 구조적 군비통제를 일방적으로 제안하며 정치선전화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남한도 1970년대 초반 미·중관계의 데탕트 분위기와 닉슨독트린 발표에 편승해서 신뢰구축, 불가침협정, 군비축소라는 현실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남북 간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신뢰구축 사항을 처음으로 문서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7·4 남북공동성명이 선언적이고 상징적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에 1980년대 말까지 남북한 간에는 실질적인 군비통제의 진전과 발전이 없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90년 냉전 종식 이후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남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하자 남북한의 신뢰구축 논의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sup>8)</sup> 1991년 12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9조에는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상호 불가침선언을 하고, 10조에서는 의견대

7) 유럽의 군비통제도 소련이 먼저 제의하였듯이 도발도 먼저 하지만 화해의 손길도 먼저 내미는 것이 공산진영의 전형적인 협상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한·소 수교는 1990년 9월 30일에, 한·중수교는 1992년 8월 24일 수교했다.

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대규모 부대이동 군사연습 통보, 군사정보 교환, 군 인사교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신뢰구축과 여건조성 문제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규정했고, 13조에서는 우발적인 무력충돌 및 확대 방지를 위해 쌍방의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hotline)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사항을 담기도 하였다. 이후 8회의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1992년 9월 남북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었고, 핵무기의 실험, 제조 및 생산,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금지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1992년 1월에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를 1992년 3월에 채택하였다. 하지만 1차 북핵 위기로 인해 남북 간 군비통제 이행과 이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남북 군비통제 역사의 두 번째 시기는 군비통제의 청사진을 마련했지만 합의서들만 채택하고 이행하지 못한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시기는 2000년 6·15를 계기로 한 군비통제 추진 시기이다. 1992년 이후 남북 간 접촉이 없다가 2000년 6·15를 계기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일련의 회담체계를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남북 간 군사회담은 2002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군사적 보장을 위해 직통전화 설치와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2004년 6월에는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2005년 8월 30일부터 서해 통신연락소가 설치되어 남북의 해군 당국 간 유·무선으로 직접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초보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일부 실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군사분야와 비군사 분야의 불균형 발전 해소와 남북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비롯해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논의를 처음으로 합의서에 담기도 했다. 남북한 군비통제 역사의 세 번째 시기는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단순히 합의서 채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단계로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점진적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시기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기까지는 남북한 신뢰구축 노력이 매우 더딜 뿐만 아니라 매우 초보적 신뢰구축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측면에 있어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서 의미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기습공격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정찰감시 자산을 운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서해 NLL, 한강하구 문제 등 군사적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김태현 2018, 23-25). 그리고 재래식 군비통제와 북한의 비핵화 이행 등 수준과의 균형에 관한 문제, 핵 및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의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국가안보전략과의 연계성에 관한 문제들은 더 숙고해 보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특히 북한의 진정성과 ‘신뢰’라는 측면에서 제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3.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현황과 함의

군비통제의 대표적인 국제기구와 조직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통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구를 바탕으로 통제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표 1>은 군비통제와 핵 및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국제협약과 기구, 체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군비통제관련 국제기구 남북한 가입현황

구분	명칭	목적	가입현황	
			남한	북한
UN	UNDC <sup>9)</sup>	군축비확산 분야 검토하여 유엔총회 보고서 제출	1991.9	1991.9
	CD <sup>10)</sup>	다자군축 담당 국제협상기구	1996.6	1996.6
핵	NPT	핵무기 확산방지 및 핵군축 실현	1975.4	1985.12 <sup>11)</sup>
	IAEA	핵의 군사적 전용 방지, 평화적 이용 기술지원 기구	1957.8	1974.9 12)
	CTBT	일체의 핵실험(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금지	1999.9	미가입
	ZC	핵관련 수출 IAEA 안전조치	1995.10	미가입
	NSG	핵물질, 기술, 장비,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1996.10	미가입
화학	CWC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이전 금지	1997.4	미가입
	OPCW	CWC 의무 이행 감시 및 사찰을 위한 집행기구	1997.4	미가입
	AG	화학, 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1996.10	미가입
생물	BWC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전면 금지	1987.6	1987.3
기타	PSI <sup>13)</sup>	불량국가, 테러집단 WMD 불법거래 차단, 확산방지	2009.5	미가입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8.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88-290.

<표 1>과 많은 국제 군비통제 조직과 기구가 있으며,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군비통제 조직 및 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은 물론 NPT 회원국 대부분이 준수하는 국제레짐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5대 국제비확산체제에 가입했지만 북한은 집행기구나 검증장치가 아직 없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만 참여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9) 유엔군축위원회(UNDC: UN Disarmament)로 193개국 이 가입, 1952년 1월에 설립되었다.  
 10) 제네바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로 65개국 이 가입, 1984년 2월에 설립되었다.  
 11) 북한은 NPT에 1985년 12월에 가입, 2003년 1월에 탈퇴를 선언한 상태이다.  
 12) 북한은 IAEA에 1974년 9월에 가입했으나 1994년 6월에 탈퇴를 했다.  
 13)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은 105개국 이 가입, 2003년 6월 설립되었다.

288-290).<sup>14)</sup> 북한은 수출통제체제의 어느 그룹에도 가입하지 않아 추후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에 제한을 줄 수도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한계는 NPT에 규정된 핵비확산 의무는 가입국에 한해서만 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이 재가입 해야만 NPT 규정준수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리고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NPT에 재가입하여도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규정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즉 NPT 조약 제9조 3항에 의해 핵보유국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보유한 국가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만 핵보유국이며, 기타 국가는 핵무기 비보유국임과 동시에 핵무기 보유가 금지된다(정철호 2011, 5).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도 한계가 있다.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면 평화적이 핵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IAEA의 안전조치는 전면적 안전조치, 부분적 안전조치, 자발적 안전조치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전면적 안전조치는 NPT 제3조에 의해 모든 NPT 비핵국가와의 조약체결 시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분적 안전조치는 NPT 발효 이전 규정으로 해당국이 신고한 시설만 안전조치를 하면 된다. 그리고 자발적 안전조치협정은 NPT 규정이 핵보유국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을 요구하지 않으나 IAEA와 자발적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제시한 핵물질 및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IAEA가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나 국가안보상 중요한 물질 및 시설은 예외로 하고 안전조치 적용을 철회할 수 있다. 이처럼 IAEA의 안전조치는 5개국의 핵무기 보유국과 3개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155개국의 NPT내 비핵국 등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 적용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IAEA의 안전조치 협정은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는 한

14) 집행기구는 NPT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170개국, 1957.7)가 있고, CWC의 경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3개국, 1997.4)가 있으나 BWC의 경우 집행기구가 없는 실정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89).

계가 있다. 북한은 IAEA 전면적 안전조치협정 체결 후 탈퇴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이 IAEA에 재가입하게 된다면 핵보유국과 동일하게 자발적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거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이 부분적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핵을 포기하고 비핵보유국으로서 전면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 자발적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나 부분적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NPT의 핵보유국의 개념과 IAEA 규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다. 그리고 핵을 포기하고 비핵보유국으로서 전면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이고, 북한의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국가안보 증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先 신뢰구축, 後 군축’의 원칙아래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군비통제 접근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은 남북한만의 관계개선과 신뢰구축, 남북한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에 치중하여 왔다는 측면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레짐, 국제비확산체제, 다자안보협력적인 부분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가 가능하도록 북한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미·중의 패권경쟁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군사적인 분야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인 범위로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화학, 생물학무기까지 확장해야 할 것이다.

#### IV.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

군비통제 이론의 발전적 검토와 유럽에서의 군비통제, 기존 한반도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현황과 함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한반도에서의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향후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위한 환경적 요인을 면밀히 살펴서 극복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군비통제 이론의 부재나 현재의 국제공조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해서 한반도에서 군비통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화학 및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대책과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한 군비통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이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자체가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군비통제로 해결하게 된다면 또다른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그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핵군축 프레임으로 전환하게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도 결부될 수 있고, 핵군축 협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북한은 북핵 폐기에 상응한 미국의 핵우산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 등 군비통제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위한 환경적 요인, 사전에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이고, 남북 및 미·북 회담 및 협상, UN 등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함에 있어 목표와 원칙, 비핵화 추진 로드맵 등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추진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대전략부터 새롭게 검토해서 한국의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박재완 2019).

그리고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통치이념, 국가전략, 대남전략, 핵전략, 군사노선 등 큰 그림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헌법보다 상위의 노동당 규약이나 핵보유국법, 대남적화전략, 핵·경제병진노선 등 북한의 대전략부터 폐기·수정토록 요구해야 하며, 만약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래식 군비통제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5)</sup>

15)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2010년 개정되어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가 민족해방 민주주의 남조선혁명전략을 실현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

남북한 군비통제 의제에서 화학 및 생물학무기 문제를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추후 남북한 군비통제 협의에 있어서 화학 및 생물학무기에 관련된 의제도 적극적으로 상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북한의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폐기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남북한만의 합의로 달성하기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자안보협력 및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발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군비통제의 최대 관건은 신뢰구축이고 기존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확장하여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이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군사적 보장 방안으로서의 신뢰구축 조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를 확장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는 다양한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교류, 남북경제협력 등이 해당될 것이다.

신뢰(信賴, trust, confidence)의 사전적 의미는 ‘믿고 의지함’이다.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상대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 공개성(openness),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꼽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투명성, 공개성, 예측가능성을 군사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한용섭 2015, 127).

신뢰구축은 쉽고 가벼운 내용부터 시작하여 합의 도출 및 시행의 과정과 결과를 계속해서 누적하는 것이 중요하고, 군비통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남북한의 신뢰구축 조치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

---

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한반도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2년에 개정된 헌법 전문과 2013년 4월 1일 천명한 핵보유국법에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언,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으로 일부 신뢰구축 조치가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고, 한반도 안보환경 등을 고려할 경우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신뢰구축조치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보증까지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유럽의 신뢰구축 환경과 비교해보면 한반도는 단순한 전쟁방지 목적으로 군비통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통일까지 지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이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병용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적이기 보다는 통일정책, 대북정책, 북핵정책, 군비통제 정책은 진영이나 정권에 구애됨이 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up>16)</sup>

신뢰구축조치에서 군사적인 부분을 정치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 못지않게 신뢰구축에서 실질적인 군비통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및 합의 위반 시 제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이 아쉬워할 수 있는 제재 수단,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7)</sup>

군비통제나 신뢰구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사찰(inspection)과 검증(verification)이 될 것이다. 군비통제에 있어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라는 말처럼 신뢰와 검증은 군비통제에 있어서 오랜 화두였다. 특히 검증(verification)은 합의한 것을 제대로 잘 준수하느냐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검증에 대한 수단과 방법, 세부절차에 대하여 상호 호의적으로 합의하고 시행한다면 이미 양국 간 상당한 신뢰관

16)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구상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3대 대북제안을 담고 있었다(평화연구원 2014, 1-4).

17)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의 긍정론과 부정론 논쟁으로 비칠 수 있으나, 당당한 남북관계와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정치·경제·문화·이념 등에 대한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호의적인 합의와 시행이 없다면 검증 절차에 대한 갈등이 그 동안 형성해왔던 신뢰를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재래식 군비통제와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의 본질적인 차이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 등 핵폐기와의 연계성에 관한 문제, 화생무기 군비통제의 문제, 전반적인 국가안보전략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많은 부분 추가로 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의 검증을 위해서는 재래식 군비통제 검증보다 더욱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재래식 무기의 군비통제에서 검증은 무기의 수량이나 폐기를 확인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으나, 핵 및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경우 지하화된 시설에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이나 핵시설 등 은밀하게 진행된 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에 대비해서 기술과 인력, 조직을 구비해야 할 것이며, 검증 수단에 있어서도 영공 개방을 통한 국가·국제기술수단을 활용하고, 기술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IAEA와 OPWC 등 국제공인기구 사찰관과 통합하여 편성된 국제공동검증단을 통해 첨단화된 검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화생무기의 경우 이중목적 시설로 은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 생산·저장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밀화되고 첨단화 된 검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검증을 위해 상주감시소 운용, 통합적 현장사찰(OSI, On Site Inspection), 과학적 시료채취 및 분석을 위한 검증이 필요하다(문성준 2020, 137-182).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위해서는 재래식 군비통제와 달리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한반도 주변국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활용하는 방안, UN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위해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통일부의 범정부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V. 결론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핵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여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8, 210).

하지만 군비통제가 절실한 분쟁국가 간에는 군비통제가 성사되지 않고, 오히려 군비통제 필요성이 적은 국가 간에는 성사 가능성이 증대되는 ‘Catch-22’의 군비통제 역설처럼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황진환 2017, 278).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은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우선 군비통제 이론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운용적 군비통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군축연구소(UNIDI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의 구분을 벤치마킹하여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정치적 신뢰구축까지 포함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으로 확장하고,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의 구분을 군비제한 및 감축의 ‘군축’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군비통제를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제한 및 감축으로 군비통제 이론을 개선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신뢰구축의 문제로 초기 신뢰형성 및 구축, 보장, 검증 및 위반 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군비통제에 있어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것은 유럽의 군비통제 사례 분석에서와 같이 가능한 협상, 실행이 용이한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협의해서 합의하고 이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첨예한 문제를 뒤로만 미룬다는 것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처럼 북한은 지속해서 합의사항을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구축 뿐만 아니라 합의 이

행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절한 제재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과 수단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비통제 이행에 있어 추후에 도래하게 될 문제는 사찰과 검증이라는 난관이다. 그리고 이 사찰과 검증을 위해 무엇보다 사찰과 검증의 절차와 방법, 수단을 구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기술과 인력, 조직도 사전에 대비해서 구비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재래식 군비통제와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재래식 군비통제의 경우 많은 경우 남북한의 합의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의 경우 남북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 다자안보협력,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가장 큰 비대칭 위협으로 한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화학,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 다자안보협력체제 등 국제레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가입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국제레짐에 가입토록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시 강압적인 수단으로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향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가장 난제가 될 것은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초보적인 재래식 군비통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군비통제를 위해 범정부, 국제공조를 통한 다자안보협력,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제대로 알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대학교. 2002.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 국방부. 2014.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623호.
- 김열수. 2013.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서울: 법문사.
- 남만권. 1991. “남북한 군비통제의 감시 및 검증방안.” 『국방논집』 제14권. 193-209.
- 남만권. 2006.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대한민국 국방부. 2018.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문성준. 2020. “북한 비핵화 과정의 기술적 검증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재완. 2019. “북한 비핵화 방안, 국가 대전략부터 재설정해야 한다.” 『The Assembly』 (2019년 4월 22일)
- 변현도. 2019. “한반도 군비감축 추진 환경 및 접근 전략.” 『전략연구』 제26권 1호, 205-243.
- 이근욱. 20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한 비판: 평화조약과 군비통제의 필요성과 국제정치 이론,” 『사회과학연구』 제14집 2호, 262-287.
- 오윤경 외. 2000. 『현대국제법』. 서울: 박영사.
- 이서항. 1998.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포괄적 군비통제 방안.” 『한반도 군비통제』 제24집, 1-24.
- 이성우.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 본 북한 핵 문제.” 『JPI정책포럼』 제121권, 2-26.
- 이승근. 2010.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과 선결요건.”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집 1호, 127-151.
- 이태규. 2012. 『군사용어사전』, 서울: 일월서각.
- 이표규. 2019. “과거와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비통제 접근방법 비교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2호, 147-156.
- 정철호. 2011. 『NPT 유용성 한계의 극복 방향: 미국의 인도 핵무기 용인과 NPT 파급영향』 세종정책연구 2011-16, 성남: 세종연구소.
- 진시원. 2004. “국제 안보 레짐으로서의 PSI와 한국의 안보.” 『국방정책

- 연구보고서』 04-12, 1-98.
- 평화연구원. 2014. “우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신뢰하는가?” 『평화연구원현안진단』 제110호, 1-4.
- 한용섭. 2002.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이론, 선례, 정책 대안.” 『국가전략』 제8권 4호, 47-75.
- 한용섭.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보와 북핵문제 해결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53-77.
- 한용섭. 2015.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 홍민. 2018. “남북 군비통제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의제인 이유.” 『경향신문』 (9월 14일), A5.
- 황진환 외. 2017. 『新 국가안보론』 서울: 박영사.
- Burns, Richard. D. 1993. *Encyclopedia of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Goldblat, Jozef. 2002. *Arms Control: The New Guide to Negotiations and Agreement*. SIPRI.
- Shelling, Thomas C. and Halperin Morton H. 1985. *Strategy and Arms Control*, Washington D.C: Pergamon Brasseyy's.
- Rand Strategy Assessment Center. 1989. “A Conceptual Framework for Operational Arms Control in Central Europe.” *RAND RESEARCH BRIEF-7802*.
- Tulliu, Steve and Schmalberger, Thomas. 2003. *Coming to Terms with Security: A Lexicon for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Confidence-Building*. UNIDIR.
- U.S.DoS. 2019.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Compliance Report*. 1-70.

투고일 : 2020년 2월 26일 . 심사일 : 2020년 3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4월 1일

\* 박재완은 조선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연구교수, 화생방방재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북핵 검증” “EMP 방호” “SLBM 대응” “군비통제 방안”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이 있다.

<Abstract>

Direction of Arms Control for WMD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the Theory and Case Analysis, CBMs

Park, Jae-wan  
(Wonkw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rms control of WM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s also carried out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udimentary arms control. However, North Korea declared itself as a nuclear power state, and with a large amou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orth Korea has declared a new path and is facing a new phase in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the adequacy of the arms control theory was examined, and the propulsion plan and the method for confidence building that applied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apons were proposed. The way to confidence building is to actively identify means that can be used as sanctions and leverage in building, guaranteeing, verifying. And in order to control WMD, it is necessary to promote WMD using international regimes.

**Keywords** : WMD, Arms Contro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ternational Regime, Verification